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2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41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군수

변 론 종 결 2016. 12. 20.

판 결 선 고 2017. 1. 24.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취득세(가산세 포함) 합계 39,158,080원 및 각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합계 3,642,7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2].

---

1) 원고가 제출한 2016. 12. 19.자 참고자료(2016. 12. 20. 제6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진술)에는 2012. 11. 29.자 매각분에 대하여 취득세 3,530,000원, 가산세 2,135,710원이 각각 부과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취득세 3,830,000원, 가산세 1,835,710원의 오기로 보인다.

2) 가산금은 제외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2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redacted]산림청 [redacted]관리소장이 공고한 국유임산물(입목처분) 매각 긴급 입찰절차에 참가하여 낙찰자가 된 후 대한민국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국유임산물(이하 '이 사건 각 임산물'이라 한다)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임산물을 취득하였다[3].

순번	계약일	소재지	면적(ha)	수종	본수(주)	매각대금(원)	취득일
1	2010. 11. 17.	[redacted]군 B	54	소나무 외 3종	26,663	345,750,000	2010. 11. 30.
2	2011. 6. 17.	[redacted]군 C	44	소나무 외 4종	23,685	204,500,000	2011. 7. 4.
3	2012. 1. 9.	[redacted]군 D	76	소나무 외 3종	47,942	327,000,000	2012. 1. 25.
4	2012. 11. 29.	[redacted]군 E	32	소나무 외 2종	18,180	191,500,000	2012. 12. 13.
5	2013. 4. 25.	[redacted]군 F	-	소나무 외 1종	-	78,700,000	2013. 5. 9.
6	2013. 8. 20.	[redacted]군 G	31.4	소나무 외 2종	15,449	85,300,000	2013. 8. 20.

나. 피고는 2015. 7. 30.경 행정자치부로부터 '국유 입목 매각자료' 통보를 받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을 통하여 '입목'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43,357,980원(각 가산세, 가산금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는데, 위 납세고지서에는 각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가산세의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

순	처분일	계약일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소계(원)

3) 피고가 제출한 '국유 입목 매각자료 제공 및 취득세 등 추징대상 현황 제출'에 의하여 인정되는 매매계약 내역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2

번			(가산세, 가산금 포함, 원)	(가산세, 가산금 포함, 원)	
1	2015. 10. 1.	2010. 11. 17.	11,837,090	1,183,700	13,020,790
2	2015. 11. 18.	2011. 6. 17.	6,900,400	690,030	7,590,430
3	2015. 10. 1.	2012. 1. 9.	10,308,340	900,030	11,208,370
4	2015. 11. 18.	2012. 11. 29.	5,835,680	504,660	6,340,340
5	2015. 11. 13.	2013. 4. 25.	2,327,250	200,290	2,527,540
6	2015. 11. 18.	2013. 8. 20.	2,459,690	210,820	2,670,510
합계(원)			39,668,450	3,689,530	43,357,980

다. 원고는 이 사건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1. 5. 지방세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 26. [redacted]도지사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이 사건 당초 처분에 본세와 가산세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한 위 나. 항 표 기재 순번 1, 2번 각 부과처분은 그대로 두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위 나.항 표 기재 순번 3번 내지 6번 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가산세 및 가산금 부분을 수차례 직권취소하고 재부과하였다가, 최종적으로 2016. 12. 5. 순번 3번 내지 6번 기재 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직권취소하고, 이 부분 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본세 및 가산세 대상금액, 세율, 산정방법 및 관련법령을 기재하여 원고에게 다시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 중 위 도표 순번 제1, 2항을 포함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6, 10, 14,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2

가. 원고의 주장

1) '입목'이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나 관습법상의 명인방법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사건 각 임산물은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원고는 대한민국과 '원목'을 매수하고 이를 반출할 권리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입목'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계약의 목적물은 입목이 아니라 원목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입목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2) 만약 이 사건 각 계약의 목적물이 입목에 대한 것으로 해석된다면, 이는 국가가 입목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받도록 계약을 강제한 것이 되므로, 신의칙에 위반되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가사 이 사건 각 계약의 목적물이 입목이라고 보더라도, 피고가 수십 년간 원목 생산 목적의 입목 취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아니하다가, 갑자기 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소급하여 부과하는 것은 비과세관행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4) 이 사건 처분 중 각 가산세 부분의 경우, 피고가 그동안 과세하지 않던 이 사건 각 임산물에 대하여 갑자기 취득세를 부과한 점, 지방세법상의 입목의 개념이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임산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모두 위법하다.

5) 이 사건 처분 중 2015. 10. 1.자 및 2015. 11. 18.자 각 취득세(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은 본세와 가산세의 세액조차 특정되어 있지 않고, 특히 가산세의 종류나 세액의 산출근거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모두 위법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2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6조 제11호는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서 정한 '입목'이란 지상에 식재되어 생육하고 있는 과수, 임목, 죽목을 말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955 판결, 1983. 10. 11. 선고82누515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 각 계약의 목적물이 '입목'인지 여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 내지 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관계 법령의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계약의 목적물은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는 입목이 아니라 근주(根柱)를 제외하고 벌채하여 반출한 원목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을 통하여 입목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2

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위법하다.

① 원고는 국유임산물 매각 입찰 절차에 참가하여 낙찰자가 된 후 대한민국으로부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임산물을 매수하는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각 임산물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의 계약서와 [별지 제20호 서식]의 인도증을 사용하여야만 하는데, 국유임산물 중 입목과 원목은 동일한 서식의 계약서와 인도증을 사용하고 있어 계약서와 인도증의 형식만으로 매각대상이 입목인지 원목인지가 구분되지는 아니한다.

② ㉠ 원고는 입목벌채 및 원목도매 등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국유임산물인 입목을 벌채하여 원목을 반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 국유림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은 '주산물의 근주는 특별히 계약한 경우 이외에는 매각 임산물 중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에는 매각 국유임산물에 근주가 포함된다는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또한 이 사건 각 계약에 선행된 국유임산물 매각 입찰 공고에 의하면, 매각물건 내역에 각 수종별로 본수와 입목재적 외에 용도(펄프, 일반 등)를 명시하였고, 기타 사항에 '매수 산물 반출을 위한 운재로 신설에 대하여는 대금사정 시 반영되었으므로 운재로 노선도에 의하여 매수인이 추진하여야 한다'고 기재하는 등 원고가 입목을 벌채하여 원목을 취득함을 전제로 예정가격을 산정해서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각 계약서에 각 수종별로 입목재적 외에 생산지정된 재적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계약의 당사자들은 입목이 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2

닌 원목을 거래의 목적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③ 국유임산물의 매각기준을 정하고 있는 국유림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에서는 '입찰참가자격 및 첨부서류'와 '임산물의 인도' 방법에 있어 '입목'과 '원목'을 구분하여 달리 규율하고 있으나, 이는 단지 벌채의 주체, 즉 입목 상태로 매각하여 벌채를 매수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것인지 국가가 벌채하여 매각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둔 것에 불과한 것이다.

④ 산림청 예규인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국유림인 입목 매각의 경우 매각대금은 입목의 지상부 재적에 조재율(입목재적 중 원목으로 생산 가능한 비율)을 적용하여 원목 재적에 대해 금액을 산정하고, 원목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벌목조재 및 운반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되는바, 이는 결국 원목의 가격인 셈이고, 이 사건 각 계약의 매각대금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⑤ 지방세법 제15조는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으로 제1항 제7호에서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을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계약 이후에 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신설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법 제15조 제1항 제7호에서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 부과되는 취득세가 0원이 되는바, 이는 위와 같은 경우 입목의 취득은 형식적인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원목을 취득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취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확인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2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백정현

판사 임성민

판사 유선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2

별지 1

목 록

(단위 : 원)

계약일	2010. 11. 17.	2011. 6. 17.	2012. 1. 9.	2012. 11. 29.	2013. 4. 25.	2013. 8. 20.	합계
처분일	2015. 10. 1.	2015. 11. 18.	2016. 12. 5.	2016. 12. 5.	2016. 12. 5.	2016. 12. 5.	
과세표준	345,750,000	204,500,000	327,000,000	191,500,000	78,700,000	85,300,000	1,147,450,000
취득세액(a)	6,915,000	4,090,000	6,540,000	3,830,000	1,574,000	1,706,000	24,655,000
무신고 가산세액(b)	1,383,000	818,000	1,308,000	766,000	314,800	341,200	4,931,000
납부불성실 가산세액(c)	3,539,090	1,791,420	2,460,340	1,069,710	370,670	340,850	9,572,080
가산세 소계(b+c)	4,922,090	2,609,420	3,768,340	1,835,710	685,470	682,050	14,503,080
취득세 (a+b+c)	11,837,090	6,699,420	10,308,340	5,665,710	2,259,470	2,388,050	39,158,080
농어촌 특별세액(d)	691,500	409,000	654,000	383,000	157,400	170,600	2,465,500
무신고 가산세액(e)	138,300	81,800					220,100
납부불성실 가산세액(f)	353,900	179,140	246,030	106,970	37,060	34,080	957,180
가산세 소계(e+f)	492,200	260,940	246,030	106,970	37,060	34,080	1,177,280
농특세 소계 (d+e+f)	1,183,700	669,940	900,030	489,970	194,460	204,680	3,642,78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2

별지 2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7.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세율의 특례 대상)

① 법 제15조 제1항 제7호에서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의 취득을 말한다.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유림의 기능을 증진하고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7조(국유임산물의 매각)

① 산림청장은 국유임산물을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② 국유임산물의 매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2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국유임산물의 매각)

② 관계기관장이 국유임산물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임산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주산물의 근주는 특별히 계약한 경우 이외에는 매각 임산물 중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8조(매각입목의 표지)

국유림 안의 입목을 매각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벌채구역의 경계는 3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경계목의 가슴높이 부분에 백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할 것
2. 솎아베기 및 골라베기의 대상목은 가슴높이 부분에 적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할 것
3. 모두베기 및 모수작업에서 존치시킬 대상목은 가슴높이 부분에 황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할 것. 다만, 존치시킬 대상목을 벌채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표시한 황색 페인트 아래에 적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한다.

제29조(국유임산물 매각기준)

국유임산물매각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별표 2] 국유임산물 매각기준(제29조 관련)

1. 정의

"국유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것(토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매각예정가격의 사정 등

매각예정가격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는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에 따라 사정한다.

5. 입찰참가자격 및 첨부서류

가. 입목을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때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목을 매수하거나 벌채허가 등을 받아 벌채한 실적이 있는 자의 경우 : 벌채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산림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 자격증 사본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임업인의 경우 : 임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임업훈련기관에서 임업기능인 교육을 이수하거나 임업기계장비에 관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의 경우 : 교육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2

이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원목생산업 등록을 한 자의 경우: 원목생산업등록증 사본

나. 입목 외의 국유임산물을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때 : 제한 없음

다. 국유임산물을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때 : 산림청장이 정하는 참가자격과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0. 임산물의 인도

가. 임산물의 인도는 매각금액의 납부를 확인 후 매각한 산물의 소재지에서 인도증의 교부로써 한다. 다만,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경우에는 산물의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인도증을 교부할 수 있다.

나. 국유임산물의 인도증은 다음의 서류와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1) 입목을 매각하는 경우

(가) 구역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형도에 벌채구역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부

(나) 실측도(축척 6천분의 1 임야도에 벌채구역의 경계와 면적을 측량하여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부

(다) 임산물 운반로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임산물 운반로 설계도서 1부

(라) 재적조서 1부

2) 원목을 매각하는 경우

(가) 1)에 해당하는 서류 각 1부

(나) 임산물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형도. 이하 같다) 1부

[별지 제19호서식]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서

(제1쪽)

임산물 소재지	소재지	지번	지목	경영계획구	임반·소반
반출(벌채)기간	인도일부터 개월 이내				
채취(벌채)면적	㎡				

임산물 종류	수량	용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2

	본수(본)	입목재적(㎥)	조재(제탄)율(%)	매각수량(생산지정) [㎥, 톤(t)]	

매각대금	원
계약보증금	원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년 월 일

계약담당관(갑) 인

매 수 인(을)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주: 입목·원목 외의 경우에는 매각대상 국유임산물의 종류에 맞는 용어·단위로 변경하여 작성한다.

210㎜×297㎜(백상지 80g/㎡)

(제3쪽)

임지 소재지	지번 (임반·소반)	공부면적 (㎡)	대부·사용허가 면적(㎡)	산지전용면적 (㎡)	기간	비고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국유림으로서 최초 대부·사용허가 신청 또는 산지전용신고를 한 국유림 외의 구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6항에 따른다.

제14조(시설물의 철거) 매수한 임산물의 채취·가공 또는 운반을 위해 을이 국유림 안에 설치한 시설(임도시설은 제외한다)의 철거가 필요하여 갑이 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을은 이를 철거해야 한다.

주: 갑과 을은 필요한 경우 서로 합의 하에 이 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가감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2쪽)

제1조(대금납입) 을은 매각대금을 소관 관서의 세입징수관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기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2

한다. 다만, 을의 신청에 따라 갑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초 대금납입 기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납입기한을 연기할 수 있되, 이 경우 을은 납부해야 할 금액에 실제 연체한 일수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른 연체료를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제2조(임산물의 인도) ① 갑은 대금납입을 확인한 후 을에게 임산물의 인도를 통보하고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임산물을 인도해야 한다.

② 임산물의 인도는 벌채구역위치도, 벌채구역도 및 매목재적조서의 사본을 첨부한 임산물 인도증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조(임산물의 수령) 을은 임산물을 인도받은 후에는 임산물의 수량, 품질 또는 산림면적에 착오가 있거나 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갑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임산물의 반출) ① 을은 반출기간 내에 매수한 임산물을 국유림 밖으로 반출해야 한다. 만일, 벌채구역 안에 미벌채목이 있을 경우에는 반출기간 내 입목의 생장기간에 해당하는 4월부터 10월까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생장량에 해당하는 대금을 을이 별도로 납부하기로 한다. 다만, 솔잎혹파리 피해임지로서 피해정도가 "심"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o 생장량 대금 = 1㎥당 단가×미벌채 재적×0.05×생장기간 해당 개월 수/7

* 1㎥당 단가는 매각 시 산정한 예정가격 단가와 계약 단가 중 높은 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을이 임산물을 인도받은 날(인도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을 시점으로 하며, 제1조에 따른 연체금을 지정된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금 납입지연 일수를 제1항의 기간에서 공제한다.

제5조(미반출 임산물의 귀속) 을이 매수한 임산물을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임산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해당 임산물은 국고에 귀속된다. 다만, 을이 대부 또는 사용허가 구역 안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같은 임지 안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반출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6조(계약해제) 소관 관서의 장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보증금과 이미 납부된 매각대금 및 매각대상 임산물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1. 납부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산림관계법령이나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임산물 수령 후 3개월 내에 임산물 반출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3개월 이상 임산물 반출을 위한 작업을 중지한 경우. 다만, 기상 상황에 따른 장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인도받은 임산물 외의 임산물을 채취·반출·처분하거나 임산물을 인도받기 전에 임산물을 채취·반출·처분한 경우(종업원의 행위를 포함한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반환) 계약보증금은 갑이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계약해제사유의 발생 여부를 확인한 후 반환한다.

제8조(매각대금의 반환) 갑은 매각대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반환할 수 있다.

제9조(벌채목의 표시) 골라베기 및 솎아베기의 경우는 가슴높이 부분에 적색 페인트로 표시한 입목을 매각대상 임산물로 한다. 다만, 모두베기 및 모수작업의 경우와 벌도목·원목·굴취수목 및 목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2

등으로 매각대상 임산물의 표시를 달리한 경우에는 임산물 인도 시에 그 표시방법을 알리기로 한다.

제10조(수라의 설치) 매각대상 임산물을 반출하기 위해 설치하는 수라(修羅)는 목(木)수라 또는 플라스틱수라에 한정한다.

제11조(임도시설) 을은 매수한 임산물의 반출에 필요한 임도시설 등을 설계서에 따라 설치한 경우 그 공사완료 즉시 갑에게 서면, 구두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 갑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갑은 그 검사결과 공사가 설계서와 다르게 된 경우에는 을이 이를 보완토록 해야 한다.

제12조(반출완료 통보) 을은 매수한 임산물의 반출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갑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5조 단서에 따른 반출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 ① 을은 매수한 임산물을 채취·가공 또는 운반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국유림에 대해서는 이 계약에 다음 사항을 부기함으로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또는 「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른 대부·사용허가 신청 또는 산지전용신고(대부 또는 사용허가 구역 안에서 산림형질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산림형질변경지 실측도를 첨부한 경우에 한정한다)를 갈음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임산물 인도증

매수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임산물 소재지	소재지	지번	지목	경영계획구	임반·소반
채취(벌채) 면적	㎡				

임산물 종류	수량			
	본수(본)	입목재적(㎥)	매각수량(생산지정) [㎥, 톤(t)]	반출(벌채)기간

년 월 일 계약한 국유임산물(제 년도 분)을 위와 같이 인도합니다.

년 월 일

인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위 인도한 국유임산물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수령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입목을 매각하는 경우 가. 구역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형도에 벌채구역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1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2

	나. 실측도(축척 6천분의 1 임야도에 벌채구역의 경계와 면적을 측량하여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1부 다. 운재로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운재로 설계도서 1부 라. 재적조서 1부 2. 원목을 매각하는 경우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서류 각 1부 나. 임산물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형도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1부 3. 입목·원목이 아닌 국유임산물을 매각하는 경우 가. 구역위치도 1부 나. 구역도(축척 6천분의 1 임야도에 구역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실측도 1부 다. 임산물의 위치도 1부(채취된 국유임산물을 매각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수량조서 1부 주: 입목·원목 외의 경우는 매각대상 국유임산물의 종류에 맞는 용어·단위로 변경하여 작성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끝.